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58
----------	-------

발의연월일 : 2025. 9. 29.

발 의 자 : 전종덕 · 정혜경 · 용혜인
최혁진 · 소병훈 · 한창민
손 솔 · 민형배 · 송옥주
서삼석 · 윤종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행법 제68조제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 제68조제1

항 본문 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5조, 제47조, 제68조 및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후단 중 “탄핵심판”을 “탄핵심판 및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한다.

제45조 본문 중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적용 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 또는 중지를 명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을 중지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법원의 재판
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재판
4.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적극적으로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의 재판

제75조제1항 중 “모든”을 “법원을 포함한 모든”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u>탄핵심판</u> 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0조(준용규정) ① ----- ----- ----- ----- ----- ----- -. ----- <u>탄핵심판 및 확정된 형사재판</u> 을 대상으로 하는 <u>헌법소원심판</u> ----- ----- ----- ----- -----.
② (생략)	② (헌행과 같음)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u>조항의 위헌 여부만을</u>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위헌결정) ----- ----- <u>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u> -----.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

	<u>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u> <u>1.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u> <u>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법원의 재판</u> <u>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재판</u> <u>4.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적극적으로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의 재판</u>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u>모든</u>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제75조(인용결정) ① ----- ----- <u>법원을 포함한 모든</u> ----- -----.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